

규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5년 6월

#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김 태 윤\* · 이 수 아\*\*

네거티브규제는 특정하게 열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 규제네거티브화는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며, 빠른 환경변화의 적응, 민간의 자율과 창의 증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규제비용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였고,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취업 및 노동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

\*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tykiim@gmail.com)

\*\* 한양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sua8873@naver.com)

접수일: 2014/11/25, 심사일: 2015/02/03, 게재확정일: 2015/02/03

4 규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5년 6월

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용어: 네거티브규제, 규제개혁, 규제완화, 새만금지역

## I. 서언

네거티브규제는 특정하게 열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Stiglitz, 2008:508; 김유환·황태희, 2008:66; 황태희, 2011:84). 규제네거티브화는 기존의 규제를 그러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헌에 따르면 규제네거티브화는 규제를 명확화하고 단순화하기 때문에 빠른 환경변화에 대처가능하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규제당국과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규제네거티브화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권적 권리를 보다 확장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규제방식이다. 국무조정실(2013)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서는 기업 또는 국민의 활동·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입지규제와 관련하여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규제는 ‘금지되지 않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라는 법언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인 준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이원우, 2008:372). 이와 같이 네거티브규제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금지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승필, 2011:321; 최유성, 2011:72).

본 연구는 기존의 정부규제를 입주기업 및 단지전체단위에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규제네거티브지역화하는 국가적 실험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새만금지역은 기존 이해집단이 없어 규제완화 시

범지역 운영에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하여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분석의 편의상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새만금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평가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II장에서는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평가측정과 관련된 문헌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네거티브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해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한 모델의 구성, 지표개발 및 가정에 대해 논의한다. IV장에서는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평가측정한다. 효과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측정한다. 또한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지 미치게 되고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므로,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발효과를 평가측정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다.

## II. 기존 연구의 검토

‘네거티브규제’는 원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규제’라는 개념에서 비롯되었다(김유환·황태희, 2008:63-64; 황태희, 2011:83-85).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규제제도의 유형론으로서 학문적으로 제시된 적은 거의 없으며, 그와 관련된 어떠한 법학적·경제학적·정치학적 또는 행정학적 이론체계도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김유환·황태희(2008)의 연구에서 일반적인 규제유형론으로서 ‘네거티브규제’라는 개념을 제시한 적이 있으나, 아직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하고 일반적 이론체계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거티브규제’ 개념은 이론적인 관점에서 구상하기보다는 규제개혁의 실무 작업을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네거티브규제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나 편의상 통상법상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그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되어있는 규제” 정

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유환·황태희, 2008:66).

본 장에서는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평가측정과 관련된 문헌들의 내용을 정리하여, 네거티브규제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평가측정을 직접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외국인투자의 효과,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 규제부담(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 등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여, 지역투자의 활성화, 기업의 자율성 신장으로 인한 매출 및 고용증대, 규제준수 비용의 경감 등과 같은 규제네거티브화의 대표적 효과들을 평가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지표개발 등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1. 외국인투자의 효과

외국인투자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은 투자에 따른 일반적인 고용효과에 대한 문헌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주무현 외(2010)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유발한 일자리규모를 추정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장설립 및 사업장 확대에 의한 직접적인 고용효과뿐만 아니라, 해당기업의 생산활동 및 투자활동 증가에 따라 전·후방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의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업간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현 외(2010)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1990년~1995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68억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158,285명으로 도출되었다.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인원은 122,881명으로 추정되었다.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그리고 통신산업 순으로 취업유발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또한 2기(1996년~2001년)에 유입된 인센티브 수혜조건에 부합하는 외투기업의 직접투자금액은 약 222억 달러로 전기에 비해 절대적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2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전체에 유발한 취업인원은 462,226명으로 도출되었다. 자영업자나 무임금가사노동자를 제외한 고용유발 인원은 314,334명으로 추정되었다. 도소매, 금융 및 보험 그리고 운수산업 순으로 취업유발 인원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박성재·이규용(2009: 53-72)은 개별기업의 자료를 사용하여 외국인투자변동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창출(고용증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성재·이규용(2009)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비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연평균 증가율이 3.7%로 나타났다. 즉 외투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비외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박장호·김영민(2008)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변동이 국내설비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차분포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김영태·박장호·김영민(2008)의 연구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총액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직접투자 1% 증가 시 취업자 수는 0.00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1997년에서 2007년 사이 외국인직접투자가 약 15.5만 명의 취업을 유발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그린필드형 투자가 1% 증가 시 취업자 수는 0.009% 증가하고, M&A형 투자증가 시 0.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탄성치는 0.01%로 나타났다.

송용주·변양규(2013)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이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에 의한 효과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단기적으로 2012년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해 총 3,656억 원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해 본 결과, 2012년 171,216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을 때,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동반 가족의 방문으로 총 8,48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545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단기 효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장기 효과를 추정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와 동반 가족의 방문으로 인한 총수익은 2020년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11조 5천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약 8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 2.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는 김종호 외(2009)의 연구를 중심으로, 창업증대 및 생산성 증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창업증대 및 생산성 증가 효과

전반적인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1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호 외(2009)에서 사용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Entry_{i,t} = \alpha + \beta Reg_{i,t} + \gamma AFS_{i,t-1} + \sum_{\tau=1}^T \delta_{\tau} Year_{\tau,t} + u_i + \epsilon_{i,t}$$

$Entry_{i,t}$ 는 t시점에서 i산업의 사업체 수 기준 진입률

$Reg_{i,t}$ 는 t시점에서 i산업의 진입규제율

$AFS_{i,t-1}$ 는 (t-1)시점에서 i산업의 사업체별 평균 종사자 수

$Year_{\tau,t}$ 는 연도 더미변수로서  $\tau=t$ 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

$u_i$  관측되지 않은 산업 i의 특성

$\epsilon_{i,t}$ 는 오차항

한편, 최현경(2011)은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되었을 때의 신규창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허가 원칙 허용 전환 시 인허가의 25.36% 포인트 완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현경(2011)은 이를 김종호외(2009)의 기본모형 결과를 적용하여, 2010년 12월, 총 40개 분야에 24만 6,624개의 업체가 있으며 인허가 원칙허용전환 시 인허가의 평균 25.36% 포인트의 완화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총 3,001개의 신규 업체 발생을 예상하였다.

## 1) 규제강도에 따른 창업 효과

진입규제를 규제 강도에 따른 강/중/약 진입규제로 구분<sup>1)</sup>한 모형에 의하면, 규제유형의 강도가 높을수록 진입규제의 진입률 저하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ntry_{i,t} = \alpha + \beta Reg_{i,t}^j + \gamma AFS_{i,t-1} + \sum_{\tau=1}^T \delta_{\tau} Year_{\tau,t} + u_i + \epsilon_{i,t}, j=\text{강, 중, 약}$$

1) 강진입규제에는 정부독점, 지정, 중진입규제에는 허가, 면허, 승인, 인가, 약진입규제에는 등록, 신고, 검사가 포함된다.

김중호 외(2009)의 모형 2에서 산업별 강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즉 해당 산업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 산업의 비율을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70%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3에서 산업별 중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4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업종별 창업 효과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진입규제와 창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30%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현경(2011)에 따르면,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되었을 때의 신규창업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인허가 원칙 허용 전환 시 제조업은 29.00% 포인트, 서비스업은 27.95% 포인트 완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 비중은 50%를 넘고 있지만 70~80%에 달하는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0%, 국내 제조업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민간부문 R&D 투자액도 선진국에서는 30~40%가 서비스업에서 이뤄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9할을 제조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중소기업의 창업 효과

진입규제와 중소기업 창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1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강도에 따른 진입규제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면, 산업별 강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출 경우, 즉 해당 산업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 산업의 비율을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8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4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고용창출 효과

전반적인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은 0.1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호 외(2009)는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가 1,570만여 명이므로, 산업 전반의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춤으로써 약 21,9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최현경(2011)은 김종호 외(2009)의 기본모형 결과를 적용하여, 2010년 12월, 총 40개 분야에 120만 9,84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되었을 때의 신규창업 효과가 평균 25.36% 포인트의 완화 효과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면 총 1만 5,94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 1) 규제강도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진입규제를 규제 강도에 따른 강/중/약 진입규제로 구분하여 보면, 강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즉 해당 산업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 산업의 비율을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0.4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75,36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강진입규제와 중진입규제의 완화 효과는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업종별 고용창출 효과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진입규제와 신규 기업의 고용창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신규 기업의 고용창출률은 0.27%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입규제를 10% 포인트 낮추면, 즉 해당 산업에서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 산업의 비율을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0.6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규제부담(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네거티브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새만금지역에 창업 및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는 규제완화에 따른 창업 및 투자가 용이해진다는 효과와는 별개로 창업 및 투자에 앞서 허가, 승인 등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산업연구원(2006)에 따르면,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 관련 비용은 약 6,500만원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별입지 1만㎡의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 공장건축, 제조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총비용은 약 23억 9,3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행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직·간접으로 필요한 비용 및 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은 약 6,500만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공장설립 전체 비용 23억 9,300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표 1> 참조). 중요 행정비용 및 부담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장설립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전문 환경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하며, 검토보고서 작성비용은 약 1,500만 원이 소요된다(지역 및 업종 등에 따라서 1,000만~1,800만 원이 소요). 다음으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와는 별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 작성기관과는 다른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1,000만 원 정도이다(지역에 따라 800만~1,200만 원 소요). 또한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공장부지 면적 1만㎡ 미만이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준비 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7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지역별로 500만~1,300만 원 소요). 중요 부담금으로는 산지전용의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항목이 있으며, 이는 준보전산지를 기준으로 1,697원/㎡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부담금 금액은 공장부지 공시지가의 30% 상당액으로 지역에 따라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국무조정실(2006)은 국내 기업의 행정부담 실태를 표준비용모델을 참고로 하여 시범적으로 조사하였다. 행정부담은 “규제가 요구하는 정보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의 비용”을 의미하며, 기업당 평균 행정부담비용은 약 2억 9,800만 원으로 산출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경제규제를 시장규제, 행정조사부담, 납세순응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였다. ‘시장규제비용’은 가격, 생산, 시장진입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의 부담을 의미한다. ‘행정조사부담’은 기업이 행정조사에 순응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과 기술혁신 감소 또는 규제이행을 위해 필요한 설비구입 및 설치비용을 의미한다. ‘납세순응비용’은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세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즉,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시간 비용, 외부수수료, 기타 잡비를 이용하여 순응비용을 추정한다.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납세순응비용을 모두 합친 경제규제비용은 78.1조 원이며, 시장규제비용은 65조 원, 행정조 사부담은 9.7조 원, 납세순응비용은 3.4조 원이다. 전 산업을 기준으로 사업체 1개당 규제비 용으로 24,360,000원이 산출되었다.

〈표 1〉 공장설립 단계별 비용(비수도권, 1만㎡ 산지전용 기준)

단계	세부절차	소요비용 (만 원)	비고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1. 사업타당성검토(★)	500	
	2. 부지매입	36,300	- 12만 원/평×3,025평
	3. 대체산립자원 조성비(★)	1,700	- 준보전산지 1,697원/㎡ ×10,000㎡ - 농지전용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sup>2)</sup>
	4.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1,500	- 1,000만~1,800만 원
	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1,000	- 800만~1,200만 원
	6.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sup>3)</sup>	700	- 지역별로 500만~1,300만 원
	7. 토목설계비용	1,500	- 최소 5,000원/평×3,025평
	8. 평균경사도, 입목축적조사서(★)	100	- 50만~200만 원
	9. 적지복구예치금(보증보험 증권)	-	- 산지복구비
	10. 창업사업계획승인(★)	800	- 창업절차 대행비용 (500만 원 한도 정부지원)
공장건축	1. 공장부지 조성공사 등	20,000	
	2. 도로확보	2,000	- 진입도로 개설시
	3. 공장건축비	120,000	- 120만 원/평×1,000평
	4. 건축설계 및 허가	3,000	- 3만 원/평×1,000평
	5. 적지복구설계 및 준공 승인(★)	200	- 최소기준(최고 1,000만 원)
	6. 건축사용허가 및 준공		
	7.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설치	50,000	
공장등록	1. 공장설립 완료신고		
	2. 공장등록증 발급		
합 계	행정비용 및 부담금 <sup>1)</sup> (총비용)	6,500* (239,300)	

주 : 1) 행정비용 및 부담금은 (★) 항목을 합한 액수임.

2) 농지법 시행령 57조(농지보전 부담금 공시지가의 30%). 따라서 농지 1만㎡ 전용의 경우에 만약 공시 지가를 6만 원/평으로 상정하면, 6만 원/평×3,025평×0.3=5,445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1만㎡ 미만 개별공장이며, 산지전용의 경우 1만㎡ 이상이어야 전용허가 대상이 되므로 위 표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중소형 공장부지 규모가 1만㎡ 미만인 점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절차에 포함하였음.

### 3. 소결

이상 이론적 검토의 내용들을 규제네거티브화의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한 방법 및 지표 개발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김종호 외(2009)의 연구에서 국내 진입 규제와 경제활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방법 및 결과를 참조하여,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와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의 항목으로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평가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연구원(2006)에서 추산하고 있는 ‘행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직·간접으로 필요한 비용 및 부담금’을 적용하여 규제부담(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평가측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무현 외(2010)와 송용주·변양규(2013)와 같이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발효과를 평가측정하고자 한다.

## Ⅲ. 규제네거티브화 효과 측정을 위한 모델 및 지표의 개발과 가정

### 1. 투자유치증가 효과

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 이외에 해당 지역에 신규 기업을 유치한다는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바, 투자유치 증가 효과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와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는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화를 하지 않았어도 유치할 수 있었던 투자액 이외에,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투자액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한편,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효과’는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한 기업의 수를 의미한다.

(1) 모델

1)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

**■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F)**  
 =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 ×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비율(G)  
 \*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당 투자유치목표금액(D)\*\* × 새만금산업단지의 총 면적(E)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당 투자유치목표금액(D)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계획 중 민간조달금액(B)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C)

2)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

김중호 외(2009)의 연구 결과를 새만금지역에 적용하여,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새만금지역의 신규 기업의 창업(진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를 추정하였다.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효과는 새만금지역의 전산업을 대상으로 전체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을 때와 규제강도별(강진입규제 / 중진입규제)로 구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을 때의 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① 전체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  
   **■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D)**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E)  
 ②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효과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F)**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H)’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G)**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I)’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새만금산업단지의 산업물류시설용지 면적(C)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체당 면적(B)

(2) 지표의 개발

1)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

먼저, 추가적인 투자규모의 증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투자유치 규모를 알아야 한다. 새만금산업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유치업종 또한 유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수준에서(1㎡당 투자유치목표금액)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액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는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하지 않아도 새만금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투자금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계획 중 민간조달금액(B)’을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로 평가하였으며, 여기에는 민간조달금액은 국내외의 금융기관, 민간사업자(건설 투자자) 등의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C)’은 169,648,182㎡(약 5천 1백만 평)이고 사업비 중 74,119,872백만 원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당 투자유치목표금액(D)’은 436,903 원이다.

〈표 2〉 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

지정일자	2003-08-11	
총 면적	169,648,182㎡(51,318,575.1평)	
계획인구	644,700명	
재원별 사업비계획	합계	86,600,222백만 원
	국고	1,173,250백만 원
	지방비	7,783,400백만 원
	민간조달	74,119,872백만 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z.go.kr/popup/fez\\_pop.jsp?code=1](http://www.fez.go.kr/popup/fez_pop.jsp?code=1))

따라서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는 8,170,094,073,864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1㎡당 투자유치목표금액(D)’과 ‘새만금산업단지의 총 면적(E)’ 18,700,000㎡(약 5백 7십 평)를 곱하여 도출할 수 있다.

둘째,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비율(G)’ 10.93%는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 중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가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중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본 것이다.2)

-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부가가치상의 차이(생산액의 차이)  
 =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 + 규제네거티브화 효과(경제자유구역의 효과)
-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부가가치상의 차이(생산액의 차이) : 100%(526.93%)
-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 : 89.07%(469.36%)
- 규제네거티브화 효과(경제자유구역의 효과) : 10.93%(57.57%)
- \* 괄호 안의 수치는 100% 기준으로 환산하기 전의 원수치를 나타냄.

**2)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

먼저,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는 그 성격이 유사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참조하여,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C)’ 9,808,000m<sup>3</sup>)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체당 면적(B)’ 12,875m<sup>2</sup>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는 762개이다.

〈표 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구역 면적 및 업체 수\*

산업시설구역 면적(m <sup>2</sup> )	업체 수(개)	업체당 면적(m <sup>2</sup> )
618,000	48	12,875

\*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외 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의 평균값을 이용

2) 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의 12~14페이지 참조  
 3) 대부분의 기업이 새만금산업단지 내 산업물류시설용지에 입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새만금산업단지의 총면적 대신 산업물류시설용지만 적용하였다. 실제로는 상업업무시설용지나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 등에도 편의시설 등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면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효과는 더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증가효과 등을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이유로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을 지표로 사용하였다.

둘째,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E)’과 ‘규제강도별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H, I)’은 김종호외(2009)의 연구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sup>4)</sup>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1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진입 규제 중 정부독점, 지정 등 강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70%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진입 규제 중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중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의 진입률은 0.4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종사자 1인 이상 전산업의 기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E)’은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50%의 전체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0.80%가 된다.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H)’은 40%의 강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2.80%,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I)’은 50%의 중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2.40%가 된다.

### (3) 가정

본 연구는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하여, 규제네거티브화로 50%의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다고 가정한다. 단,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효과는 강진입규제의 경우 40%,<sup>5)</sup> 중진입규제는 50%가 완화된다고 가정한다.<sup>6)</sup>

## 2. 부가가치창출 효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일반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

4)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줄인다는 것은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산업 수 중 특정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산업 수를 10%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text{진입규제율} = \text{특정 산업에서 진입규제를 받는 세부 산업 수} \div \text{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부 산업 수}$

5) 152개의 새만금관련 규제 중 약 3%(5개)가 강진입규제라고 가정하고, 이 중 2개의 규제를 완화하여 약 40%의 규제가 완화(감소)된다고 가정하였다.

6) 152개의 새만금관련 규제 중 인허가의제(111건), 개별인허가(11건), 자격제한(14건) 등 총 136건을 중진입규제로 분류하고, 이 중 40여개의 규제를 완화하여 약 50%의 규제가 완화(감소)된다고 가정하였다.

티브화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부가가치, 즉 생산액을 의미한다.

경제자유구역인 새만금산업단지는 제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산2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르게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이 둘의 산업단지는 부가가치상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상의 차이는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경제자유구역은 다른 산업단지들에 비해 규제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 기업활동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다른 산업단지들의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규제네거티브화 효과’ 도출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규제네거티브화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효과가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논리로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상의 차이로 보고, 이 중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 (1) 모델

■ 새만금산업단지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효과 (J)

= 새만금산업단지의 1㎡당 규제네거티브화 효과(M)\* ×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N)

\* 새만금산업단지의 1㎡당 규제네거티브화 효과(M)

=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차이(K)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

\*\*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

=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A)\*\*\* -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E)\*\*\*\*

\*\*\*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A)

=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비율(B)

=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C) ÷ 군산2국가산

7)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부가가치상(생산액)의 차이 =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 + 경제자유구역 효과(규제네거티브화 효과)

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D) × 100  
 \*\*\*\*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E)  
 =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비율(F)\*\*\*\*\*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G) ÷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H) × 100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 1㎡당 생산액(원) ÷ 업종별 부가가치율 합계(%)

## (2) 지표의 개발

새만금산업단지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부가가치상의 차이(생산액의 차이) 중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구분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sup>8)</sup>와 일반산업단지인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 차이를 구한 이후, 이 중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A)’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비율(B)’로 평가측정하였다. 2012년 12월 말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C)’은 1,692,380원,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D)’은 321,177원이었다. 따라서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비율(B)’은 약 527% 수준이었다.<sup>9)</sup>

8)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경우, 새만금산업단지과 유치업종이 유사하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부품제조산업, 첨단융합산업, 녹색기술산업 등이다. 또한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새만금산업단지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지역적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9)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업단지 현황과 내부자료 참조

([https://www.e-cluster.net/new\\_app/indust/condition/danji\\_info\\_portal.jsp?portal\\_cd=02](https://www.e-cluster.net/new_app/indust/condition/danji_info_portal.jsp?portal_cd=02))

〈표 4〉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면적 및 생산액

구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A)	군산2국가산업단지 (B)	(B) 대비 (A)의 1㎡당 생산액 비율(%)
생산액(원)	827,900,000,000	2,849,800,000,000	526.93
산업시설구역(㎡)	489,192.60	8,873,000	
1㎡당 생산액(원)	1,692,380	321,177	

둘째,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E)’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비율(F)’로 평가추정하였다. 생산액은 이미 부가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가중치)의 합으로 생산액을 나누어 보면, 생산액의 가중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12년 각 입주업종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율의 평균값을 구하여 도출하였다(〈표 5〉, 〈표 6〉). 그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합은 213.63%,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합은 190.29%로 나왔다.

〈표 5〉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입주업종	업종코드*	부가가치율(%)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영상음반	18, 58, 59, 60, 61, 62, 63, 70, 71, 73, 85, 90, 95	50.80
지식기반R&D*		56.10
전자/정보기기	22, 25, 26, 27, 28	24.67
메카트로닉스	29	25.00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신소재,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22, 23, 24, 26, 28, 30	22.96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	-	34.10
계		213.63

\* ‘지식기반R&D’는 별도의 업종코드가 없어, ‘지식서비스’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함.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아파트형 공장’은 전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함.

출처: 산업연구원(2013), 주요산업동향지표, 제9권제2호(원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표 6〉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주업종	업종코드*	부가가치율(%)
금속제품	24, 25	19.17
기계장비	29	25.00
운송장비	30, 31	22.88
일반제조	15~33	23.05
폐기물처리	38	34.10
물류시설	50	32.00
기타*	-	34.10
계		190.29

\* '기타'는 전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이용함.

출처: 산업연구원(2013), 주요산업동향지표, 제9권제2호(원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셋째,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G)’은 792,202원,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H)’은 168,783원으로 계산되었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대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비율(F)’은 약 4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가중평균한 결과의 차이가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라고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의 차이는 약 469%라고 할 수 있다.

〈표 7〉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반영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생산액 비교

구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A)	군산2국가산업단지 (B)	(B) 대비 (A)의 가중평균한 1㎡당 생산액 비율(%)
1㎡당 생산액(원)	1,692,380	321,177	469.36
업종별 부가가치율 합계(%)	213.63	190.29	
가중평균한 1㎡당 생산액(원)	792,202	168,783	

넷째,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는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A)’가

약 527%,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E)’는 약 469%이었으므로, 이 둘의 차이인 약 58%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산업단지의 부가가치상의 차이인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A)’를 100% 기준으로 환원하면, ‘산업구조의 차이에 따른 효과(E)’가 89.07%,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가 10.93%<sup>10)</sup>이다.

다섯째, ‘새만금산업단지의 1㎡당 생산액(L)’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C)’ 1,692,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차이(K)’는 1,371,204원이다.

〈표 8〉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현황 비교

구분	새만금산업단지 (추정액)	군산2국가 산업단지	새만금산단과 군산2국가산업 단지(차이)	새만금산업단지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
생산액(원)	16,598,863,040,000	2,849,800,000,000		1,469,949,786,722
산업시설구역(㎡)	9,808,000	8,873,000		9,808,000
1㎡당 생산액(원)	1,692,380	321,177	1,371,204	149,873

‘새만금산업단지와 군산2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1㎡당 생산액 차이(K)’ 1,371,204원 중 10.93%는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새만금산업단지의 1㎡당 규제네거티브화 효과(M)’는 149,873원이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N)’은 산업물류시설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9,808,000㎡을 적용하였다.

### 3.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은 생산 및 유통 등 기업활동 전반에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매출증가와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효과는 추가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신규 기업뿐만 아니라

10) 규제네거티브화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효과(I)’로서 10.93%의 수치는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최소치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새만금산업단지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새만금지역의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규 기업과 기입주 기업 모두를 고려하여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효과를 평가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전산업을 대상으로 전체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을 때와 규제강도별(강진입규제 / 중진입규제)로 구분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였을 때의 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 모델

1) 매출증가 효과

<p>① 전체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만금지역 기업의 매출증가 효과(G)</li> <li>=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H)* +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매출액(I)**</li> <li>*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H)</li> <li>=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 ×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J) ×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li> <li>**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매출액(I)</li> <li>=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A) ×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비율(K)</li> </ul> <p>②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기업 매출증가 효과(L)</li> <li>=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N)***</li> <li>+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매출액(I)**</li> <li>***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N)</li> <li>=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수(E)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P)’ ×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li> <li>■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기업 매출증가 효과(M)</li> <li>=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O)****</li> <li>+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매출액(I)**</li> <li>****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O)</li> <li>=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Q)’ ×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li> </ul>
---

## 2) 고용창출증가 효과

① 전체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

■ 새만금지역의 고용창출증가 효과(D)

=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 수(E)\* +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고용자 수(F)\*\*

\*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 수(E)

=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 ×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G)

\*\*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고용자 수(F)

=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 ×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고용의 증가비율(H)

②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I)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 수(K)\*\*\*

+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고용자 수(F)\*\*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수(K)

=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M)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J)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 수(L)\*\*\*\*

+ 기입주 기업들의 증가된 고용자 수(F)\*\*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고용자 수(L)

=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N)

## (2) 지표의 개발

### 1) 매출증가 효과

먼저,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를 알아야 한다.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A)’은 업종별로 상이할 것이므로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B)’와 ‘업종별 업체당 매출액(C)’을 구하여 추정하였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B)’<sup>11)</sup>를 추정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의 면적<sup>12)</sup>

을 기준으로 ‘업종구성비율(D)’을 구하고, 이 비율을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sup>13)</sup>에 대입하여 업종별 업체 수를 도출하였다.

<표 9>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구성비율 및 업종별 업체 수

입주업종	업종코드	면적(m <sup>2</sup> )	비율(%)	업체 수(개)
전체	18개 업종	9,980,000	100	762
자동차부품	25, 26, 28, 29, 30, 31	2,690,000	26.95	205
일반기계부품	24, 25, 27, 29	788,000	7.9	60
조선기자재	24, 25, 26, 27, 28, 29, 31	571,000	5.72	44
고부가가치식품	10, 11, 21	905,000	9.07	69
신소재·나노융합	20, 24	1,702,000	17.05	130
핵융합(RFT)	24, 27	711,000	7.12	54
신재생에너지	20, 26, 27, 28, 29	1,219,000	12.21	93
R&D	70, 72	977,000	9.79	75
물류시설	49, 50, 51, 52	198,000	1.98	15
폐기물처리	-	158,000	1.58	12
기타	-	61,000	0.61	5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당 매출액(C)’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만을 기준으로 통계청(2011)의 ‘2010년 경제총조사’에 근거하여 도출하였으며, 다음 <표 10>의 기업 매출액 현황은 전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업종 코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당 매출액(C)’은 해당 업종들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표 11>).<sup>14)</sup>

11) 예시) ‘자동차부품업종’의 업체 수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 × 자동차부품 업종구성비율(D) = 762개 × 26.95% = 205개

12) 새만금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은 앞서 이용된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9,808,000 m<sup>2</sup>)’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산업물류시설용지 외 국제업무시설용지를 포함하고 있다.

13)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는 앞서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762개)’ 지표를 적용하였다.

14) 예를 들어, 신소재·나노융합의 경우 업종코드 20, 24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 평균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표 10> 전국 업종별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 :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종기준  
(단위: 개, 백만 원)

업종 코드	업종분류	업체 수	매출액	업체당 매출액
	전산업	3,355,470	4,332,292,658	1,291
	제조업	326,813	1,464,336,545	4,481
10	식료품 제조업	53,099	66,303,956	1,249
11	음료 제조업	1,170	8,047,923	6,879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300	124,063,180	16,995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47	14,210,794	16,778
24	1차 금속 제조업	6,451	148,078,592	22,954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4,592	82,730,945	1,515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623	263,295,000	27,36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845	18,242,154	2,325
28	전기장비 제조업	16,481	70,066,678	4,25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795	107,261,402	3,27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022	152,108,349	21,662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80	83,082,252	32,202
	운수업	347,179	147,571,423	425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22,527	47,671,206	148
50	수상 운송업	1,172	39,966,648	34,101
51	항공 운송업	139	17,666,213	127,095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3,341	42,267,356	1,8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601	117,677,853	1,667
70	연구개발업	4,082	34,137,319	8,363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7,725	25,217,483	1,423

조사대상기간 / 조사기준시점 : 2010.1.1~2010.12.31(1년간)

출처 : 통계청(2011), 2010년 경제총조사

결정하였다.

예시) ‘신소재·나노융합업종’의 업체당 매출액(C)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의 매출액 + ‘1차 금속 제조업(24)’의 매출액)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의 업체 수 + ‘1차 금속 제조업(24)’의 업체 수) = (124,063,180,000,000원 + 148,078,592,000,000원) ÷ (7,300개 + 6,451개) = 37,251,000,000원

〈표 11〉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기준

(단위: 백만 원)

입주업종	업종코드	입주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전국기준
합계	18개 업종	1,291
자동차부품	25, 26, 28, 29, 30, 31	6,162
일반기계부품	24, 25, 27, 29	7,588
조선기자재	24, 25, 26, 27, 28, 29, 31	3,979
고부가가치식품	10, 11, 21	8,992
신소재·나노융합	20, 24	37,251
핵융합(RFT)	24, 27	26,774
신재생에너지	20, 26, 27, 28, 29	6,054
R&D	70, 72	18,663
물류시설	49, 50, 51, 52	884
폐기물처리	-	1,291
기타	-	1,291

따라서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A)’은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 수(B)’와 ‘업종별 업체당 매출액(C)’을 곱하여 모두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으며, 총 10,799,952백만 원으로 나왔다.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은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A)’을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14,173백만 원이다.

〈표 12〉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종별 매출액

(단위: 개, 백만 원)

입주업종( i )	업종코드	업체 수	입주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전국기준	새만금산업 단지의 매출액	
1	자동차부품	25, 26, 28, 29, 30, 31	205	6,162	1,265,498
2	일반기계부품	24, 25, 27, 29	60	7,588	456,776
3	조선기자재	24, 25, 26, 27, 28, 29, 31	44	3,979	173,434
4	고부가가치식품	10, 11, 21	69	8,992	621,488
5	신소재· 나노융합	20, 24	130	37,251	4,839,751
6	핵융합(RFT)	24, 27	54	26,774	1,452,611
7	신재생에너지	20, 26, 27, 28, 29	93	6,054	563,227

입주업종( i )		업종코드	업체 수	입주업종별 업체당 매출액: 전국기준	새만금산업 단지의 매출액
8	R&D	70, 72	75	18,663	1,392,281
9	물류시설	49, 50, 51, 52	15	884	13,339
10	폐기물처리	-	12	1,291	15,544
11	기타	-	5	1,291	6,001

\* 폐기물처리와 기타 업종은 업종코드가 없어 전체 업종의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함.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H)’과 ‘규제강도별 신규 창업증가로 인한 증가된 매출액(N, O)’은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신규 기업의 수’<sup>15)</sup>에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주 기업들의 증가된 매출액(I)’은 ‘새만금지역 기업들의 매출액(A)’에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비율(K)’ 10.93%<sup>16)</sup>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 2) 고용창출증가 효과

먼저,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참조하여,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C)’<sup>17)</sup> 762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업체당 종사자 수(B)’ 54명을 곱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는 41,227명이다.

15) 이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E)’에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J)’ / ‘규제강도별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P, Q)’을 곱하여 추정하였으며,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J)’ / ‘규제강도별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P, Q)’은 앞서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E)’과 ‘규제강도별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H, I)’ 지표를 적용하였다.

16)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비율(K)’ 10.93%는 앞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경제자유구역의 효과(I)’ 지표를 적용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일반산업단지의 생산액의 차이가 산업구조의 차이와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고, 이 중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를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보았다.

17)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C)’는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762개)’ 지표를 적용하였다.

〈표 1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종사자 수 및 업체 수

종사자 수(명)	업체 수(개)	업체당 종사자 수(명)
2,597	48	54

\*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와 청라1지구일반산업단지의 평균값을 이용

둘째,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G)’과 ‘규제강도별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M, N)’은 김종호 외(2009)의 연구에 근거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진입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은 0.1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진입 규제 중 정부독점, 지정 등 강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0.4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진입 규제 중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 중진입규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10% 포인트 줄이면,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이 0.4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종사자 1인 이상 전산업의 기업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G)’은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50%의 전체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0.70%가 된다.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M)’은 40%의 강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1.76%,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에 의한 고용 증가율(N)’은 50%의 중진입규제가 50% 완화되는 경우 2.40%가 된다.

셋째,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주 기업들의 증가된 고용자 수(F)’는 ‘새만금산업단지의 종사자 수(A)’에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고용의 증가비율(H)’인 10.93%<sup>18)</sup>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 (3) 가정

본 연구에서는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하여, 규제네거티브화로 50%의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다고 가정한다. 단,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는 강진입규제의 경우 40%, 중진입규제는 50%가

18)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고용의 증가비율(H)’은 “매출증가 효과”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의 증가비율(K)’ 지표와 같은 이유에서 10.93%를 적용하였다.

완화된다고 가정한다.<sup>19)</sup>

#### 4.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의 감소 효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의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 감소 효과는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와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는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새만금지역에 신규 입주하려는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 등의 관련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는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규제준수 비용이 절감되는 수준을 의미한다.<sup>20)</sup>

##### (1) 모델

##### 1)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

- 새만금지역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K)
- $$= 1\text{개 기업의 } 1\text{개 규제당 소요되는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I)} \times \text{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 건수(J)} \times \text{새만금산업단지의 신규 입주 기업 수(D)}$$

19)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의 가정과 동일하다.

20)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의 감소 효과”의 경우, 다른 효과들과 독립적인 효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해 기업들의 규제준수부담이 감소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투자유치증가 효과”,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창업을 위한 규제부담이 감소된다면, 신규 기업의 창업은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을 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위한 행정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분리해서 그 효과를 평가측정하였다.

## 2)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

- 새만금지역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효과(G)
- = 새만금지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한 업체당 규제준수 비용(A)\* ×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완화율(D) ×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H)
- \* 새만금지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한 업체당 규제준수 비용(A)
- =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C) ×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의 비율(B)

### (2) 지표의 개발

#### 1)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

먼저,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지역의 신규 입주 기업 수를 알아야 하며, 이는 규제네거티브화를 하지 않아도 신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수를 포함하는 수치여야 한다. ‘통상적인 새만금지역의 신규 입주 기업 수(A)’는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하지 않아도 새만금산업단지에 창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기업 수를 의미하며, ‘새만금산업단지의 전체 입주 기업 수(C)’에 ‘기업의 신생비율(B)’을 곱하여 도출한다. 그 결과 약 121개이다. ‘기업의 신생비율(B)<sup>21)</sup>(15.87%)은 2007년부터 2011년의 ‘기업의 활동, 신생, 소멸’과 관련된 통계청 자료<sup>22)</sup>의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둘째, ‘새만금산업단지의 신규 입주 기업 수(D)’는 앞서 추정한 “신규 기업 창업증가 효과”에서 도출된 6개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한 기업의 수(E)’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새만금지역의 신규 입주 기업 수(A)’ 121개를 합하여 총 127개가 된다.

셋째,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F)’은 산업연구원(2006)<sup>23)</sup>에서 추산하고 있는 ‘1개 기업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 관련 비용(G)’ 약 6,500만 원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의 개수(H)’는 2006년 기준, 제조업 창업관련 규제가 총 328개이나 개별업종 관련 규제나 세계관련 규제 등을 제외하면

21) ‘기업의 신생비율(B)’ = (신생 기업 수 ÷ 활동 기업 수) × 100 = (797,190개 ÷ 5,023,464개) × 100 = 15.87%

22)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이용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23) 구체적인 비용항목은 “산업연구원(2006), 법인·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pp.224-225” 참조

주요규제는 68개<sup>24)</sup>라는 것을 참조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1개 기업의 1개 규제당 소요되는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I)’은 ‘1개 기업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 인·허가 관련 비용(G)’을 ‘새만금지역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의 개수(H)’로 나눈 값이며, 955,882원이다.

## 2)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

‘새만금지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한 업체당 규제준수 비용(A)’은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C)’<sup>25)</sup>에 기은경제연구소(2008)<sup>26)</sup>에서 제시한 규제비용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의 비율(B)’ 2.8%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즉, ‘새만금지역의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한 업체당 규제준수 비용(A)’은 397백만 원이다.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H)’는 762개이다.<sup>27)</sup>

## (3) 가정

본 연구에서는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하여, 규제네거티브화로 50%의 규제가 사실상 완화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에서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 건수(J)’는 50% 수준인 34개가 완화된다고 가정하였다.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의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완화율(D)’ 역시 50%라고 가정한다.

24) 국가기록원,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 개선방안」 이용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708&pageFlag=>)

25) “매출증가 효과”의 ‘새만금지역의 업체당 연간 매출액(F)’ 14,173백만 원을 적용하였다.

26) 기은경제연구소(2008)는 20인 이하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규제비용이 10.9%, 20~50인 4.6%, 50~20인 이상 2.8%, 100인 이상 기업은 3.3%라고 보고한 바 있다.

27) ‘새만금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수(H)’는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새만금 산업단지의 업체 수(A)(762개)’ 지표를 적용하였다.

## 5.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과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 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가능한 유발효과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노동유발 효과로 구분하여 평가추정하고자 한다.

‘생산유발 효과’는 최종수요에 의한 각 산업의 생산과급 과정에서 총산출액의 수준을 의미한다.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대부분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 과급효과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되는 모든 산업부문 제품의 생산에까지 미치게 되며 그 총산출의 규모도 결정된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국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최종수요의 발생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 ‘노동유발 효과’는 생산의 과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과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고용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에 발생하는 효과 즉, 투자증가 및 매출증가로 인한 유발효과를 평가추정한 후, 규제네거티브화를 하지 않았어도 유치할 수 있었던 투자규모와 매출액을 포함한 유발효과도 함께 평가추정한다.

### (1) 모델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단위의 유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계수들을 이용한다. 이 계수들은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이다.

### 1) 생산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생산유발계수에 최종수요를 곱해 구한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F)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 생산유발계수(A)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G)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D)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 생산유발계수(A)

### 2) 부가가치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부가가치유발계수에 최종수요를 곱해 구한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F)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 부가가치유발계수(A)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G)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D)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 부가가치유발계수(A)

### 3) 노동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는 취업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하며, 최종수요에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를 곱해 구한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G)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 취업유발계수(A)(명/10억 원)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H)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 고용유발계수(B)(명/10억 원)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I)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E)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F)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 취업유발계수(A)(명/10억 원)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J)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E)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F)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 고용유발계수(B)(명/10억 원)

(2) 지표의 개발

1) 생산유발 효과

‘생산유발계수(A)’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산업 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산출액 단위이다(1.869).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최종수요는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이 되며,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최종수요는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D)’,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이 된다.<sup>28)</sup>

28)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최종수요로서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

## 2) 부가가치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A)’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단위를 보여주는 계수(0.662)이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와 부가가치와의 기능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품의 부가가치계수가 0.9라는 것은 농림수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0.9단위임을 의미한다.

## 3) 노동유발 효과

노동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어느 산업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 즉 노동계수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동계수가 취업계수인지 고용계수인지에 따라 취업자 수(피용자와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포함)를 기준으로 한 ‘취업유발계수(A)’와 피용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유발계수(B)’로 구분된다(13.2 / 8.8).

# IV.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의 평가 및 측정결과

## 1. 투자유치증가 효과

투자유치증가 효과는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와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의 두 가지 접근법으로 살펴보았다.

규모(D)',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은 앞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 및 “매출증가 효과”에서 개발된 지표들로 각각 892,991백만 원, 1,266,834백만 원, 8,170,094백만 원, 10,799,952백만 원이었다. 이는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노동유발 효과를 평가측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평가측정 값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		892,991백만 원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	전체 진입규제 완화	
	규제 강도별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6.1개
		21.3개
		18.3개

### (1)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F)’는 약 892,991백만 원으로 평가측정되었다.

■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 효과(F)

$$\begin{aligned}
 &= \text{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A)} \times \text{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비율(G)} \\
 &= 8,170,094,073,864 \text{ 원} \times 10.93\%(\text{가정}) \\
 &= 892,991,282,273 \text{ 원}
 \end{aligned}$$

### (2)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한 기업의 수는 6.1개로 나타났다.

■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D)

$$\begin{aligned}
 &= \text{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times \text{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E)} \\
 &= 762 \text{ 개} \times 0.80\% \\
 &= 6.1 \text{ 개}
 \end{aligned}$$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강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한 기업의 수는 21.3개이며, 중진입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신규 진입 가능한 기업의 수는 18.3개로 나타났다.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F)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H)  
 = 762개 × 2.80%  
 = 21.3개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새만금지역 신규 기업의 창업증가 효과(G)  
 =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A) ×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에 따른) 신규 기업의 진입 증가율(I)  
 = 762개 × 2.40%  
 = 18.3개

## 2. 부가가치창출 효과

새만금지역에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1,469,95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산업단지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 (J)  
 = 새만금산업단지의 1㎡당 규제네거티브화 효과(M) × 새만금산업단지 산업물류시설용지의 면적(N)  
 = 149,873원 × 9,808,000㎡  
 = 1,469,950,285,510원

## 3.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구분		평가측정 값	
매출증가 효과	전체 진입규제 완화	1,266,834백만 원	
	규제 강도별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1,482,833백만 원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1,439,634백만 원
고용창출증가 효과	전체 진입규제 완화	4,795명	
	규제 강도별	강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5,232명
		중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5,496명

(1) 매출증가 효과

전체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 분석결과,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50%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새만금지역의 기업 매출액은 연간 1,266,834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매출증가 효과 분석결과, 새만금지역의 정부독점, 지정 등의 강진입규제에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40%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 매출액은 연간 1,482,833백만 원 증가할 것이며,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의 중진입규제에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50%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 매출액은 연간 1,439,634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용창출증가 효과

전체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50%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새만금지역에 4,795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강도별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고용창출증가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를 통해 정부독점, 지정 등의 강진입규제를 40% 완화하면, 새만금지역에 5,232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이며, 허가, 면허, 승인, 인가 등의 중진입규제 50% 완화하면, 새만금지역에 5,496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4.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의 감소 효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새만금지역의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 감소 효과는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와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분	평가측정 값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	4,125백만 원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연간)	151,199백만 원

### (1) 창업 및 공장설립의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50% 수준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K)’는 4,12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2)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 감소 효과

네거티브규제방식 도입으로 인해 50% 수준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새만금지역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E)’는 연간 151,199백만 원으로 나타났다.<sup>29)</sup>

## 5.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발효과

### (1) 생산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F)’는 총 4,036,714백만 원이며,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G)’는 총 39,491,730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F)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 생산유발계수(A)

29) 국무조정실(2006)은 기업당 평균 행정부담비용을 약 2억 9,800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새만금지역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계산하면, 113,538백만 원이 산출된다(“기업당 평균 행정부담비용 ×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완화율 × 새만금지역의 입주 기업 수” = 298,000,000원 × 50% × 762개 = 113,538,000,000원). 이는 본 연구의 결과 151,199백만 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경제규제를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납세순응비용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측정하였다. 시장규제비용, 행정조사부담, 납세순응비용을 모두 합친 경제규제비용은 78.1조 원이며, 시장규제비용은 65조 원, 행정조사부담은 9.7조 원, 납세순응비용은 3.4조 원이다. 전 산업을 기준으로 사업체 1개당 경제규제비용으로 24,360,000원이 산출되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새만금지역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계산하면, 9,281백만 원이 산출된다(“사업체 1개당 경제규제비용 × 규제네거티브화 도입으로 인해 완화되는 규제완화율 × 새만금지역의 입주 기업 수” = 298,000,000원 × 50% × 762개 = 9,281,160,000원). 이는 본 연구의 결과 151,199백만 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삼성경제연구소(2008)의 연구가 환경, 노동, 산업안전, 소비자보호 등 사회규제비용을 제외하고 경제규제비용만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1.869$$

$$= 4,036,714,143,351\text{원}$$

최종 수요			생산유발 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금액(원)
규제 네거티브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1.869	1,669,000,706,569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2,367,713,436,782
합계		2,159,825,651,873		4,036,714,143,351

\*생산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G)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D)}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times \text{생산유발계수(A)}$$

$$= (8,170,094,073,864\text{원} + 10,799,952,000,000\text{원}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1.869$$

$$= 39,491,730,255,403\text{원}$$

최종 수요			생산유발 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금액(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및 매출액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	8,170,094,073,864	1.869	15,269,905,824,052
	통상적인 매출액	10,799,952,000,000		20,185,110,288,000
	소계	18,970,046,073,864		35,455,016,112,052
규제 네거티브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1,669,000,706,569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2,367,713,436,782
	소계	2,159,825,651,873		20,185,110,288,000
합계		21,129,871,725,737	39,491,730,255,403	

\*생산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2) 부가가치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F)’는 총 1,429,805백만 원이며,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G)’는 총 13,987,975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F)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times \text{부가가치유발계수(A)}$$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0.662$$

$$= 1,429,804,581,540\text{원}$$

최종 수요		부가가치유발 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규제 네거티브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0.662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합계		2,159,825,651,873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G)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D)}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E)}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B)}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C)}) \times \text{부가가치유발계수(A)}$$

$$= (8,170,094,073,864\text{원} + 10,799,952,000,000\text{원}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0.662$$

$$= 13,987,975,082,438\text{원}$$

최종 수요			부가가치유발 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금액(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및 매출액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	8,170,094,073,864	0.662	5,408,602,276,898	
	통상적인 매출액	10,799,952,000,000		7,149,568,224,000	
	소계	18,970,046,073,864		12,558,170,500,898	
규제 네거티브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591,160,228,865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838,644,352,675	
	소계	2,159,825,651,873		1,429,804,581,540	
합계		21,129,871,725,737			13,987,975,082,438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 (3) 노동유발 효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F)’는 총 28,509명,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G)’는 19,006명이며,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H)’는 총 278,914명,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I)’는 185,942명으로 나타났다.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G)

$$\begin{aligned}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times \text{취업유발계수(A)}(\text{명/10억 원}) \\
 &= (892,991,282,273 \text{원} + 1,266,834,369,600 \text{원}) \times 13.2 \div 10 \text{억 원} \\
 &= 28,510 \text{명}
 \end{aligned}$$

■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H)

$$\begin{aligned}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times \text{고용유발계수(B)}(\text{명/10억 원}) \\
 &= (892,991,282,273 \text{원} + 1,266,834,369,600 \text{원}) \times 8.8 \div 10 \text{억 원} \\
 &= 19,006 \text{명}
 \end{aligned}$$

최종 수요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명/10억 원)	취업자 수(명)	계수* (명/10억 원)	고용자 수 (명)
규제 네거티브 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13.2	11,787	8.8	7,858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16,722		11,148
합계		2,159,825,651,873		28,510		19,006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I)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E)}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F)}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times \text{취업유발계수(A)}(\text{명}/10\text{억 원})$$

$$= (8,170,094,073,864\text{원} + 10,799,952,000,000\text{원}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13.2 \div 10\text{억 원}$$

$$= 278,914\text{명}$$

■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J)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E)} + \text{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매출액(F)}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C)} + \text{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매출증가분(D)}) \times \text{고용유발계수(B)}(\text{명}/10\text{억 원})$$

$$= (8,170,094,073,864\text{원} + 10,799,952,000,000\text{원} + 892,991,282,273\text{원} + 1,266,834,369,600\text{원}) \times 8.8 \div 10\text{억 원}$$

$$= 185,942\text{명}$$

최종 수요			취업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구분		금액(원)	계수* (명/10억 원)	취업자 수(명)	계수* (명/10억 원)	고용자 수(명)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및 매출액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	8,170,094,073,864	13.2	107,845	8.8	71,897
	통상적인 매출액	10,799,952,000,000		142,559		95,040
	소계	18,970,046,073,864		250,405		166,936
규제 네거티브화 효과	투자유치 규모의 증가분	892,991,282,273		11,787		7,858
	매출증가 효과	1,266,834,369,600		16,722		11,148
	소계	2,159,825,651,873		28,509		19,006
합계		21,129,871,725,737		278,914		185,942

\* 취업유발계수와 고용유발계수는 2012년의 전산업 평균값을 이용함.

## 6. 소결

이상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를 새만금 산업단지로 범위를 한정하여 평가측정해 보았다. 과대계상의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최소치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sup>30)</sup>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로 인한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네거티브화 효과만을 추정하였지만, 의료, 교육 및 관광 분야 역시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0)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새만금 전체 401,000,000㎡ 중 용지조성은 약 283,000,000㎡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3개 지구(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산산군도지구)로 총 31,858,000㎡이다.

## V. 결 론

네거티브규제는 특정하게 열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규제방식이다(Stiglitz, 2008:508; 김유환·황태희, 2008:66; 황태희, 2011:84). 규제네거티브화는 기존의 규제를 그러한 네거티브규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헌에 따르면 규제네거티브화는 규제를 명확화하고 단순화하기 때문에 빠른 환경변화에 대처가능하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규제당국과 피규제자의 규제비용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정량적인 효과를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평가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즉 새만금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진입규제 등 각종 기업관련 규제들이 경감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추정해 보았다. 이를 위해 김종호 외(2009)의 연구에서 국내 진입규제와 경제활력간의 관계를 분석한 방법 및 결과를 참조하여, 모델을 구성하고 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규제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여 50%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효과는 새만금지역의 투자유치 및 신규 기업의 창업 증가, 부가가치의 창출,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및 규제준수 부담의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전국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발효과로 구분하여 평가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유치증가 효과로 추가적으로 약 892,991백만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진입규제 완화의 경우 신규 기업의 창업이 0.80%(6.1개)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창출 효과는 연간 1,469,950백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출증가 효과는 전체 진입규제 완화의 경우 연간 1,266,834백만 원, 고용창출증가 효과는 전체 진입규제 완화의 경우 4,795명의 추가적인 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규제준수 비용의 경우, 신규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을 위해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은 연간 4,125백만 원, 새만금지역의 기업들이 기업활동 중 소요되는 규제준수 비용이 연간 151,199백만 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유발가능한 효과를 평가측정한 결과,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총 4,036,714백만 원,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총 39,491,730백만 원,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총 1,429,805백만 원,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총 13,987,975백만 원,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총 28,509명,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는 19,006명,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취업유발 효과는 총 278,914명, 새만금지역의 통상적인 투자유치 및 매출액과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노동유발 효과는 185,94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산업단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진입규제의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만을 평가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교육, 의료 및 관광 분야 등까지 규제네거티브화를 도입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네거티브화 효과를 평가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들 중 통상적인 투자유치 예상규모, 새만금산업단지의 업체 수 등 새만금산업단지의 현황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새만금산업단지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황자료를 이용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새만금산업단지와 유치업종이 유사하기 때문에 전국 경제자유구역 현황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새만금지역과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지정면적의 규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과추정에 있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는 남아 있다. 또한 효과들 상의 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과들의 추정치를 합하여 총효과로서 보지 않고 각각의 분야에서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효과의 과대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서 가능한 한 최소치를 지표 내지는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가 개별규제의 완화 효과인지 집합적 규제의 완화 효과인지에 따라 분석방법과 그 범위를 달리 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나 실제 사례가 없어 새만금지역의 규제네거티브화로 인한 규제완화의 수준을 50%로 가정하여 효과를 추정한 점은 연구결과의 매우 중요한 한계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평가측정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정량적 효과를 추정해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의 구성과 측정지표 등에 대해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위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상의 보강과 정교한 분석과정을 적용한 보다 적절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2013.
- 국무조정실, 『기업의 행정부담 기초조사』, 2006.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 규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2008.
- 김영태 · 박장호 · 김영민, 「외국인직접투자가 설비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 월보』, 한국은행, 2008.4, pp.47-78.
- 김유환 · 황태희, 『규제방식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개혁위원회, 2008.
- 김종호 · 심영섭 · 유진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진입규제 개혁 방안: 진입규제 개혁의 창업, 고용, 생산성 효과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9.
- 김태윤 · 김주찬 · 김성준 · 최성락,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배제 규제 및 개선요구 규제의 개선방안도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
- 박성재 · 이규용,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리뷰』, 통권 제49호, 2009, pp.53-72.
- 산업연구원, 『법인 ·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2006.
- 산업연구원, 『주요산업동향지표』, 제9권 제2호(원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3.
- 이동원 · 김선빈 · 박준, 『한국의 경제규제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서영준, 「의료기관 부대수익사업 실태 및 확대방안」, 『대한병원협회지』, 제34권 제4호, 2005, pp.34-41.
- 송용주 · 변양규,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규제연구』, 제22권 특집호, 2013, pp.37-83.
- 양하백 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검토』, 전라북도, 2013.
- 이명규, 「국내 외 화장품 규제현황 및 비교」, 『의약품법규학회지』, 제3권 제1 · 2호, 2008, pp.57-70.
- 이원우,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 올바른 규제정책 실현을 위한 법정정책의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2008, pp.355-389.
- 이종한,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6.
- 주무현 · 최강식 · 강성진 · 조윤형 · 광난희,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평가(V) :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정책』, 고용노동부, 2010.

최승필, 「규제완화에 대한 법적 고찰 : 인·허가 및 신고, 등록제도와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1, pp.317-347.

최유성,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특성분석을 위한 규제분류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최현경, 『인허가체계 원칙 허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2011.

한범수·장병권, 「투자수익성 분석을 통한 새만금 카지노형 복합리조트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관광학회 2011년 제70차 관광학 국제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논문집, 2011, pp.513-522.

황태희,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선」, 『성신법학』, 제10호, 2011, pp.81-102.

Joseph E. Stiglitz, “Regula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wards Principles of Cross-Border Legal Frameworks in a Globalized World Balancing Rights with Responsibilities,”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23(3), 2008, pp.451-558.

Ondrej Dostal, “Regulation of direct supplemental payments for services covered by the public health insuranc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Medicine and Law* 26(4), 2007, pp.663-676.

Pierre Sauvé, “Multilateral rules on investment: Is forward movement possibl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9(2), 2006, pp.325-355.

국가기록원, 창업 및 공장 설립 절차 개선방안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8708&pageFlag=>)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http://www.feз.go.kr/popup/feз\\_pop.jsp?code=1](http://www.feز.go.kr/popup/feз_pop.jsp?code=1))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D0001&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https://www.e-cluster.net/new\\_app/indust/condition/ danji\\_info\\_portal.jsp?portal\\_cd=02](https://www.e-cluster.net/new_app/indust/condition/ danji_info_portal.jsp?portal_cd=02))

## Preliminary Study on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 : Focused on Investment and Job Creation of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Kim, Tae-Yun · Lee, Su-Ah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a model and indicators based on theoretical foundation, and quantitatively evaluated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on corporate regulations in Saemangeum Special Economic Zone in Ko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vestment attraction, the start-up of new firms, the creation of added value, the sales and the job creation in Semangeum area would increase, and the regulatory burden would decrease. Also, the investment attraction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of firms in Saemangeum area were expected to generate production induced effect, added value induced effect, employment and labor induced effect across the country. However, if we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method not only to corporate activities sector but to other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tourism, etc, the effect would be much larger.

Key word: Negativ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Deregulation, Saemangeum Area